2025년 고2 6월 학평

2025년 시행 고2 6월 학평 국어 독서 | 표현대리제도 분석

지문 분석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재산이나 권리·영토 등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국가의 것이 됨.)시키는 제도(대리제도의 개념. 설명할 중심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이다.

예를 들어(예시. **<보기>에 다른 사례를 제시한 후 대리인, 본인, 상대방의 의무와 권리 등을 묻는 문제. 또한 1문단 + 4문단 예시를 통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A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A가 지니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여기서 '본인'은 대리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을 가리킴.)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 1문단: 대리제도의 개념과 요건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무권대리의 개념)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1문단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C에 해당함.)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2문단: 무권대리의 개념과 문제점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표현대리의 목적)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표현대리의 개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구분**)이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즉,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됨.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3문단: 표현대리의 개념과 성립 요건

민법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①.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②)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첫 번째 경우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 경우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있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③)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의 책임이 있다**(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권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4문단: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

한편 무권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리인의 책임.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표현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대리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5문단: 무권대리의 추인과 대리인의 책임

*본인: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
*외관: 보기에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겉모습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

핵심 정리

■ 주제: 민법상 표현대리 제도의 기능과 중요성

■ 구성

- 1문단: 대리제도의 개념과 요건
- 2문단: 무권대리의 개념과 문제점
- 3문단: 표현대리의 개념과 성립 요건
- 4문단: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세 가지 경우
- 5문단: 무권대리의 추인과 대리인의 책임

해제

이 글은 대리제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된다. 민법에서는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경우에 성립한다.